

# 교육과정 운영규정

(제정 2017. 9. 1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「학칙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9.1.>

**제2조(편성원칙)** ①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12.20.>

1.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인재상 구현
2. 사회의 변화와 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배양
3. 재학생, 학부모, 졸업생,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

②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은 4년을 주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1.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 및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
2.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**제3조(업무분장)** 교육과정의 개선,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업무 및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3.1.>

구분	주요 업무	담당 부서
개선	1. 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 2.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3. 교육과정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4. 그 밖에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	교육혁신본부
관리	1. 「교육과정편람」 및 「수강편람」 작성 2. 교육과정 변경 이력관리 3. 과목의 개설, 폐지, 변경, 대체인정 등 교육과정 관리 4. 그 밖에 교육과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	교무처
운영	1.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작성 2. 학기별 과목 개설 및 운영 3. 교육과정 변경요청 4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	수퍼스타칼리지, 교직지원부, 각 학과

[본조개정 2019.12.20.]

## 제2장 교육과정 편성 체계

**제4조(교육과정 편성)**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, 교양선택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교양필수에 선택필수 과목을 개설할 수 있

다.

2. 전공교육과정은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선택으로 구성한다.

②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외에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교직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자유선택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19.11.20., 2019.12.20.]

**제5조(교양교육과정)** ① 교양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성교양, 기초교양, 핵심교양, 자유교양으로 구분한다.

1. 품성교양은 채플, 기독교, 인성, 사회봉사, 진로지도세미나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3.1.>

2. 기초교양은 의사소통, 외국어,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.

3. 핵심교양은 인간과 삶, 사회와 경제, 과학과 생명, 문화와 예술, 학문융합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6.22.>

4. 자유교양은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원칙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구성한다.

② 교양과목은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17.12.19., 2019.12.20.]

**제6조(전공교육과정)** ① 전공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과정은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성한다.

2. 심화과정은 기본과정과 전공선택으로 구성한다.

② 전공기초는 6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1.>

③ 전공필수는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 및 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할 수 있다. 다만, 6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3.1.>

④ 기본과정은 42학점 이상,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.>

⑤ 전공과목은 전공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.>

[본조개정 2019.11.20., 2019.12.20.]

### 제3장 교육과정 개선

**제7조(교육과정 개선 지침)** ① 교육혁신본부장은 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선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육과정 개선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혁신본부장은 개선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0.>

1. 교육과정 개선의 목적 및 필요성

2. 교육과정 분석 결과

3.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

4.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일정 및 예산 계획

5. 그 밖에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8조(교육과정 개선 연구)** ①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두

며, 산하에 교양교육과정개선위원회와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7.12.19., 2019.9.1., 2019.12.20.>

② 교육과정개선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원칙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0.>

③ 교육과정 개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혁신본부장은 개선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0.>

1. 교육과정 개선의 목적과 필요성
2.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
3.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환류
4. 교육과정 개선안
5. 교육과정 개선안 시행을 위한 일정계획
6. 그 밖에 교육과정 개선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9조(교육과정 개선 승인)** ① 교육혁신본부장은 교육과정 개선안에 대하여 교육혁신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교육혁신본부장은 개선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1., 2019.12.20.>

② 자문 및 심의 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혁신본부장에게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0.>

##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·학습 방법 개선

**제10조(교육과정 운영)** ① 수퍼스타칼리지 학장, 학과장(전공주임) 등 교육과정 운영부서의 장은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매학기 개설과목을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과목의 신설, 폐지, 대체 인정, 명칭 및 개설학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[별지 제1호 서식]부터 [별지 제6호 서식]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19.12.20.]

**제11조(교육과정 관리)** ① 교무처장은 과목의 구성 및 개설과목이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개선 및 과목 변경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20.]

**제12조(교수·학습 방법 개선)** 「학칙」 제32조에 따른 교수·학습 방법 개선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꾸로 수업(iClass, Flipped Learning)
2. 프로젝트 및 팀 기반 수업(PBL/TBL)
3. 서비스러닝(Service Learning) & 리빙랩(Living Lab)
4. 온·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러닝(Blended Learning)
5. 교수·학습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수업 환경 개선
6. 교수법 컨설팅 등 교수역량 강화 지원

- 7. 교수·학습 질 점검 체계 구축
- 8. 그 밖의 학습 경험의 질 제고 방법

[본조신설 2019.12.20.][본조개정 2020.9.1.]

### 제5장 교육과정개선위원회

**제13조(설치)**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교육혁신본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9.12.20.>

**제1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.

③ 교무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교양교육연구센터장, 융합교육지원센터장, 진로개발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학문분야를 고려하여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추천한다. 다만, 교육과정에 산업계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약간 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9.1., 2023.3.1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19.9.1.>

**제1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- 1.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사항
- 2.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- 3. 교육과정 개선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

**제16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6장 교양교육과정개선위원회

**제17조(설치)**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수퍼스타칼리지에 교양교육과정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8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이 된다.

③ 교무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교육과정평가센터장, 교양교육연구센터장,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의 각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학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23.2.24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수퍼스타칼리지 행정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

된다.

**제19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3. 교양교육과정 개선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

**제20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장신설 2019.12.20.]

## 제7장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

**제21조(설치)**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각 학과(전공)에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학과교수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.

**제2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학과(전공) 소속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, 산업계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약간 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과장(전공주임)이 된다.

**제2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전공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사항
3. 전공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4. 전공교육과정 개선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전공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

**제24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장신설 2019.12.20.]

## 제8장 보칙

**제25조(세부사항)**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육과정편람」 및 「수강편람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3.1.>

[본장신설 2019.12.20.]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6조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2.2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6.2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## 0000학년도 전공 교과목 폐지 신청서

과 목 명	(국문)		
	(영문)		
학수번호		이수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필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선택
개설학년		개설학기	
폐지사유	- 교과목 폐지의 사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<p>「교육과정 운영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전공 교과목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0대학 000학과 학과장(전공주임) (인)</p>			







